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55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신장식 · 정춘생 · 김선민
이강일 · 차규근 · 서왕진
김준형 · 김재원 · 박은정
황운하 · 강경숙 · 이해민
백선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사전 통제나 효과적 단속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뺏다방’으로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들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기, 의료보조용품 등의 제품을 과장된 설명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시중가보다 고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 계약, 고가 강매, 환불 거부 등의 피해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후 곧바로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전 통제나 단속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하여 고령자 경제 피해, 시민 간 갈등,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

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당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방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허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다수인을 집단으로 모집하여营业을 하는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이하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영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방문판매업자”라 한다)의 명단

및 그 허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대상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소비자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등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최근 3년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6조”를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제66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방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 ----- ----- -----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방문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허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을 주
요 대상으로 다수인을 집단으
로 모집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방문판매업(이하 “허가대
상방문판매업”이라 한다)을 영
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
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영
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이
하 “허가대상방문판매업자”라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한다)의 명단 및 그 허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u>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대상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방문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1. <u>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u> 2. <u>소비자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등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3. <u>최근 3년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51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u>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 ----- -----
--	--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조의2,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 제4항 · 제5항 및 제7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2. 3. (생략)

② ~ ⑤ (생략)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illegible]

1. -----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
조-----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① -----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2. (생략) ② (생략) 제66조(과태료) ①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 설></u> 2. ~ 7. (생략) ④ ~ ⑥ (생략)	----- -----.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